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2731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김부권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292,2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292,28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B에 대한 총 57,780,930원(가산금 포함) 상당의 조세채권자이다.

관할	세 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자	관리번호	체납액
양천	종합 소득세	2015	2015.12.31	2016.8.1.	C	13,499,370
				2016.9.5.	D	19,577,560
강서	부가 가치세	2015.2기	2015.12.31	2016.5.1.	E	24,704,000
합계						<u>57,780,930</u>

나. B의 아버지인 F은 2017. 7. 10.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과 자녀인 피고(B의 누나), B이 있었다.

다. G, 피고, B은 2017. 8. 11.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2017. 7.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사망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가액은 199,0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가액은 138,523,000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B,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피담보채무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로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9. 5. 15.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 명의자를 피고로 변경한 후 2020. 3. 9.까지 전액 상환하였고,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20. 3. 9.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5,292,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 후 가액배상을 구하고, 이 사건 빌라의 경우 원물반환을 구한다.

①시가	②피담보채무액	③공동담보가액 [(①-②)×2/7]	④피보전채권액	⑤가액배상액 [min(③,④)]
138,523,000	120,000,000	5,292,280	57,780,930	5,292,280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를 특별수익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앞서 본 망인의 상속재산과 B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B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B의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B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B의 법정상속분액은 130,720,857원[= 간주상속재산 (= 199,000,000원+ 138,523,000원 + 12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되는데, B은 그 중 120,000,000원을 이미 특별수익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취소 범위는 미달 부분인 10,720,857원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① 위와 같이 법정상속분 미달 부분의 액수가 크지 아니하여 B과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미 B이 구체적 상속분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계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는 B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이로써 B의 소극재산이 감소한 점에다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③ B의 기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 68,346,040원을 납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2018. 1. 16.부터 2020. 5. 11.까지 B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본세로 총 199,000,000원을 납부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혜선

별 지 목 록

1. 충청남도 예산군 답 2,570㎡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빌라 제2층 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빌라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그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1층 671.4㎡

1층 479.06㎡

2층 367.63㎡

3층 367.63㎡

4층 367.63㎡

5층 309.89㎡

옥탑층 30.9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799.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5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799.4분의 39.66